

[illegible]

출처: KITA (2013.1.13)

2.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

○ 쌀 및 쌀 관련 제품(16개 세번)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

○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

* 현행관세 유지, 수입쿼타

- 감귤(온주밀감), 고추, 마늘, 양파: 현행관세유지

- 분유, 천연꿀, 오렌지(성출하기):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

* 계절관세: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

- 포도(5월~10월 15일), 오렌지(9월~2월)

* 세번분리: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

- 사과: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(24년간 세이프가드),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(11년간 세이프가드)

- 배: 동양배 품종은 20년간,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

* 농산물 세이프가드: 수입이 일정수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

- 쇠고기, 돼지고기, 사과, 설탕, 인삼, 맥아, 맥주맥, 발효주정, 변성전분, 감자전분 등 9개 품목

○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,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

* 돼지고기: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

- 냉동 삼겹살: 10년, 냉동 기타 부위: 5년 관세철폐
-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: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
- 낙농제품: 양허기간 장기화
- 전·탈지 분유: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
- 치즈: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

○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

3.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

○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

- EU측은 품목 수 기준 98.1%, 한국 수입액(우리의 대EU 수출액) 기준 99.5%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

○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

- EU측 품목 수 기준 91.8%, 대EU수출액 기준 88.3%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

- 음료(0-33.6%), 면류(복합세), 간장(7.7%), 비스킷(복합세) 등

○ EU측은 쌀,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

-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,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

- 쌀 및 쌀 관련 제품(39개 세번,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)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

- 품목 수 기준 1.9%, 대EU 수출액 기준 0.5%

-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(16개 세번)의 경우,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

- 토마토, 호박, 감귤, 복숭아, 자두 등

* 시장진입가격제도: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

□ 수산물 양허

1.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

○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

-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,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

○ 우리는 민감도 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

-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

○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

-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

<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, 한/미 FTA와의 비교 >

단위: %

양허 유형	한/EU FTA				한/미 FTA			
	한국양허		EU양허		한국양허		미국양허	
	품 목 (%)	수입액(%)	품 목 (%)	수입액(%)	품 목 (%)	수입액(%)	품 목 (%)	수입액(%)
즉시	12.3	6.8	40.8	25.3	14.2	1.5	72.8	82.5
2-3년	31.9	20.3	31.8	69.7	40.7	37.4	7.2	5.1
3년내	44.2	27.1	72.6	95.0	54.9	38.9	80.0	87.5
5년	23.0	50.9	27.4	5.0	7.6	25.9	3.6	0.1
5년내	67.2	78.0	100.0	100.0	62.5	64.8	83.6	87.7
6-7년	4.4	0.2	-	-	0.2	0.0	-	-
10년	27.2	6.2	-	-	36.3	30.2	16.4	12.3
10년초과	0.5	15.4	-	-	1.0	5.0	-	-
양허제외 현행관세	0.7	0.2	-	-	-	-	-	-
합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출처: KITA (2013.1.13)

2.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

○ 우리는 주요 민감 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

- 냉동 오징어, 냉동 명태, 냉동 민어: 현행관세 유지

- 냉동 고등어, 냉동 기타납치: 12년 철폐

- 냉동 볼락, 냉동 가자미, 게살, 꽃게: 10년 철폐

○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

-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(품목 수 기준 12.3%, 수입액 기준 6.8%)

3.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

○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

-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

○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(품목 수 기준 72.6%, 대EU수출액 기준 95%)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

- 냉동 황다랑어(조제용), 냉동 새우, 냉동 가다랑어, 냉동 갑오징어, 냉동 대구 등: 즉시철폐

- 연육 조제품, 냉동 기타조개, 냉동 꿀뚜기, 냉동 문어 등: 3년 철폐

□ 우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양허

< 식량 작물 >

품목	양허 내용
쌀	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
대두	콩나물용 대두의 현행관세(487%) 유지를 조건으로, 채유 및 박용은 5년 철폐 - 콩나물용(487%): 현행관세 유지 - 채유 및 박용(487%): 5년 철폐

감자	신선 및 냉장 감자의 현행관세(304%) 유지를 조건으로, 종자용 감자는 10년철폐, 냉동 감자는 5년 철폐 - 신선 및 냉장(304%): 현행관세 유지 - 종자용(27%): 10년 철폐 - 냉동(27%): 5년 철폐
보리	겉보리 및 쌀보리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, 맥주맥 및 맥아는 15년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쿼타 제공 - 겉보리(324%) 및 쌀보리(299.7%): 현행관세유지 - 맥아(269%)+맥주맥(513%): 15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 쿼타 제공 10,000톤(1년차) ~ 17,164톤(15년차)
옥수수	식용과 종자용을 구분 철폐 - pakan용(630%): 13년 철폐 - 종자용(328%): 5년 철폐
전분	15년 또는 12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쿼타 제공 - 감자전분(455%): 15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 - 옥수수전분(226%), 매니옥전분(455%), 고구마전분(241.2%): 15년 철폐 - 변성전분(385.7%): 12년 철폐, 세이프가드 적용, 무관세쿼타 제공 28,000톤(1년차) ~ 44,337톤(12년차)
기타	15년 철폐 - 녹두(607.5%), 팥(420.8%), 메밀(256.1%), 대추(611.5%), 밤(219.4%), 잣(566.8%), 발효주정(270%), 타피오카(887.4%)

출처: KITA (2013.1.13)

< 육 류 >

품목	양허 내용
쇠고기	◦민감한 6개 세번(40%): 15년 철폐,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★ 도체와 이분도체(냉장 및 냉동), 부분육(냉장 및 냉동) - 세이프가드 발동물량: 9,900톤(1년차) → 13,062톤(16년차, 매년 2% 증량) - 세이프가드 발동세율: (1 ~ 6년차까지) 실행세율을 적용 → (7 ~ 11년차) 실행세율의 75% → (12 ~ 16년차) 실행세율의 60% ◦육우(40%)와 식용설육(족·꼬리 등)(18%), 쇠고기 가공품(72%) 등: 15년 철폐

돼지고기	◦냉동 삼겹살(25%): 10년 철폐 ◦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(갈비·목살 등)(22.5%): 10년 철폐, 11년간 세이프가드 적용 ◦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: 5년 철폐 *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, 넓적다리살, 어깨살, 갈비·목살(25%) *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, 넓적다리살, 어깨살(22.5%) ◦냉동 족(18%), 돼지고기 밀폐가공품(30%): 6년 ◦식용설육(18 ~ 30%), 소시지(30%),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(27 ~ 30%): 5년 철폐
닭고기	◦민감한 2개 세번: 13년 철폐 * 냉동 가슴살 및 날개(20%) ◦냉장육(18%), 냉동(다리)(20 ~ 22.5%): 10년 철폐 ◦삼계탕(30%): 10년 철폐
계란	◦계란(41.6%), 전란액(27%): 15년 철폐 ◦난황(27%): 13년 철폐 ◦종란(27%): 10년 철폐
기타육류	◦오리고기(18 ~ 22.5%): 냉장육 10년 철폐, 냉동육 13년 철폐 ◦산양·면양고기(22.5%): 10년 철폐 ◦칠면조고기(18%): 7년 철폐 ◦녹용·녹각(20%): 15년 철폐

출처: KITA (2013.1.13)

< 낙농품, 꿀, 사료 >

품목	양허 내용
연유 발효유	◦ 탈지분유·전지분유(176%)·연유(89%): 현행관세 - 무관세쿼타 제공 1천톤(매년 3% 증량) ◦ 혼합분유(36%): 10년 철폐 ◦ 조제분유(36 ~ 40%):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제공 450톤(매년 3% 증량) ◦ 발효유(36%): 10년 철폐
치즈 (36%)	◦체다치즈: 10년 철폐 ◦체다 이외의 치즈: 15년 철폐 ◦치즈 무관세쿼타 제공 4,560톤(매년 3% 증량)
밀크와 크림 (36%)	◦10 ~ 15년 철폐 - 지방함량 6% 이하: 15년 철폐 - 기타 지방함량 6% 초과: 13년 철폐 - 냉동크림: 10년 철폐
버터 (89%)	◦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350톤(매년 3% 증량)
유장 (49.5%)	◦ 식용: 10년 철폐 - 무관세쿼타 3,350톤(매년 3% 증량)

	◦ 사료용: 즉시 철폐
꿀	◦천연꿀(243%): 현행관세, 무관세쿼타 50톤(매년 3% 증량) ◦인조꿀(243%), 로알제리(8%), 벌꿀조제품(8%): 10년 철폐
사료품목	◦ 사료용 근채류(100.5%): 15년 철폐 ◦ 보조사료(50.6%): 12년 철폐 - 무관세쿼타 5,500톤(매년 3% 증량) ◦ 사료용 옥수수(328%): 5년 철폐

출처: KITA (2013.1.13)

< 과일, 과채류 >

품목	양허 내용
감귤류 (144%)	◦감귤(온주밀감): 현행관세(144%) 유지 ◦맨더린, 클레멘타인: 15년 철폐
오렌지 (50%)	◦감귤 성출하기(9~2월): 현행관세(50%) 유지 - 무관세쿼타 제공: 20톤(1년차) → 60톤(11년차) (이후 고정) ◦감귤 비출하기(3~8월): 관세 30%에서 시작하여 7년철폐
사과(45%)	◦후지 계통 품종: 20년 철폐, 세이프가드 24년 적용 ◦기타 품종: 10년 철폐, 세이프가드 11년 적용
배(45%)	◦동양배 품종: 20년 철폐 ◦기타 품종: 10년 철폐
포도(45%)	◦성출하기(5월~10.15): 17년 철폐 ◦비출하기(10.16~4월): 관세 24%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
키위(45%)	◦ 15년 철폐
복숭아, 단감 (45%)	◦ 10년 철폐
딸기	◦ 신선(45%): 10~12년 철폐 * 초본류 딸기: 10년 철폐, 나무딸기: 12년 철폐 ◦ 저장(30~45%): 즉시~7년 철폐 * 일시저장처리: 즉시 철폐, 조제저장처리: 7년 철폐 ◦ 냉동(30%): 5년 철폐
토마토	◦신선 및 냉장(45%): 7년 철폐 ◦토마토 주스(30%), 소스: 5년 철폐 ◦토마토 케첩(8%), 페이스트(5%): 즉시 철폐
오이	◦신선 및 냉장(27%): 즉시 철폐 ◦일시저장처리(30%): 10년 철폐
호박	◦ 신선 및 냉장(27%): 즉시 철폐 ◦ 건조(30%): 10년 철폐
가지(27%)	◦즉시 철폐
수박(45%)	◦12년 철폐
멜론(참외 포함) (45%)	◦12년 철폐 (껍질은 즉시 철폐)

출처: KITA (2013.1.13)

< 양념채소, 인삼, 특작 >

품목	양허 내용
고추	◦핵심 4개 세번(270%): 현행관세 유지 - 신선 및 냉장 고추, 건조고추, 고춧가루 등 ◦냉동고추(27%): 15년 철폐
마늘	◦핵심 4개 세번(360%): 현행관세 유지 - 신선 및 냉장 마늘, 일시저장처리 마늘, 건조마늘 ◦냉동마늘(27%): 15년 철폐 ◦조제저장처리 마늘(30%): 10년 철폐
양파	◦신선 및 건조 양파(135%): 현행관세 유지 ◦냉동양파(27%): 12년 철폐 ◦조제저장처리 양파(30%): 5년 철폐
생강	◦신선 생강(377.3%): 18년 철폐 ◦설탕저장처리 생강(30%): 5년 철폐
파	◦건조 파(30%): 7년 철폐 ◦조제저장처리 쪽파(30%): 5년 철폐 ◦쪽파, 기타파속채소(27%): 즉시 철폐
인삼	◦핵심 7개 품목(222.8 ~ 754.3%): 현행관세 유지 - 수삼 및 홍삼, 백삼 등 뿌리삼류(본삼, 미삼, 잡삼) ◦홍삼가공품 6개 품목(754.3%): 15년 철폐 및 세이프가드 19년간 적용 - 홍삼엑스, 홍삼엑스분, 타블렛 및 캡슐 등 ◦인삼가공품 2개 품목(20%): 13년 철폐 - 인삼엑스, 인삼엑스분 등 ◦인삼 관련 조제식료품: 10년 철폐 - 인삼차, 홍삼차 등
땅콩	◦땅콩(230.5%): 18년 철폐 ◦땅콩 조제품(50 ~ 63.9%): 10년 철폐
참깨 참기름	◦참깨(630%): 18년 철폐 ◦참기름(630%): 18년 철폐

출처: KITA (2013.1.13)

< 엽근채류 >

품목	양허 내용
당근(30%)	◦5년 철폐 (건조는 7년, 일시저장처리 10년)
무(30%)	◦10년 철폐 (건조는 7년)
배추 (27%)	◦5년 철폐 (케일 등은 즉시)
양배추 (27 ~ 30%)	◦즉시 철폐 (건조 양배추는 10년)
기타채소	◦채소주스: 5년 철폐 ◦채소류 혼합물: 즉시 철폐 ◦냉동·일시저장처리: 즉시 철폐 ◦조제저장처리·설탕저장처리: 5년 철폐 ◦건조는 7년, 신선/냉장은 10년 철폐
기타	◦토란줄기(건조) 10년 철폐, 고구마줄기(건조) 7년, 칩줄기 및 뿌리 5년, 연뿌리(설탕저장처리) 5년

출처: KITA (2013.1.13)

< 가공식품 >

품목	양허 내용
설탕	◦향미 또는 착색제가 가미된 것: 현행관세 유지 ◦기타: 16년 철폐, 세이프가드 21년간 적용
대두유 옥수수유	◦대두유: 조유는 10년, 정제유는 5년 철폐 ◦옥수수유: 5년 철폐
장류	◦된장, 춘장(8%): 10년 철폐 ◦간장(8%), 고추장(45%), 기타장류(쌈장, 청국장) : 5년 철폐
소스류	◦혼합조미료(45%): 15년 철폐 ◦인스턴트 카레(45%): 5년 철폐 ◦마요네즈(8%): 10년 철폐 ◦겨자(8%): 즉시 철폐
빵류, 기타식품류	◦식빵, 건빵 등 빵류: 5년 철폐 ◦커피(생두), 홍차, 라면, 파스타, 아몬드 등: 즉시 철폐
주류	◦포도주(15%): 즉시 철폐 ◦맥주(30%): 7년 철폐 ◦스카치, 버본, 아이리쉬 위스키(20%): 3년 철폐 ◦데킬라, 보드카, 브랜디(20%): 5년 철폐

출처: KITA (2013.1.13)